

●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-1호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「유해화학물질 제조·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·고시합니다.

2023년 12월 29일

화학물질안전원장

「유해화학물질 제조·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

1. 개정이유

지속적인 산업계 의견 수렴에 따른 정상별 취급시설 기준을 재설비 하고 세부사항을 명확화하여 재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환기설비, 검지·경보 설비를 공정·물질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기준 합리화

나. 현행 제도를 반영하여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문구 조정

3.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(nics.me.go.kr)의 자료실-법령정보 확인